[별표 8] 장애인·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기준

구분	설치항목	시설내용	원상복구여부	적용대상
현관	1. 마루굽틀 경사로	-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	○	지체·뇌병변장애인
욕실	2. 단차 없애기	-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	×	제3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	3.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	- 출입구 폭 80센티미터 이상 확대 (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) - 개폐방향 변경(안여닫이→ 밖여닫이)	×	
	4. 좌식 샤워시설	- 욕조 미설치,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(L자형1개, -자형1개)	×	
	5. 좌변기 안전손잡이	-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(L자형1개) 설치	×	
	6. 수건걸이 높이 조정	- 바닥면에서 1.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	○	
	7. 높낮이 조절 세면기	-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	×	
	8. 좌변기 옆 여유공간 확보	-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해 좌변기 옆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	×	지체·뇌병변장애인
주방	9. 좌식 싱크대	- 휠체어 및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	○	제3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	10. 가스밸브 높이 조정	- 바닥면에서 1.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	×	
거실	11. 비디오폰 높이 조정	- 바닥면에서 1.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	×	
	12. 시각경보기	- 비상상황 발생시 청각장애인이 인지가 가능하도록 시각경보기 세대 내 1개소 설치	○	청각장애인
	13. 야간센서등	-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	×	지체·뇌병변장애인
	14. 조명밝기 조정	- 거실 조명 밝기(600~900럭스(lux))	○	청각장애인
침실	15. 조명밝기 조정	- 침실 조명 밝기(300~400럭스(lux))	○	
기타	16. 음성유도 신호기	- 상가·관리소·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	×	시각장애인